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공영주차장 :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② 민영주차장 : 직할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 3 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별표 1을 적용(이 경우 “직할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30분단위로 시 조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

제 4 조(주차장 사용제한 등)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5 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과 같다.

-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 ③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 3. 주차장 이용시간
 -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 6 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부산직할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 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 부 하 여 할 금 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1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단위로 선납

제 7 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 ③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내의 주차전용건축물(부설주차장은 제외)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시 조례 제7조 제3항을 적용한다.

제 2 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 8 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미터 미만 도로로 한다.

제 9 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 주차구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당해 지정 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경우 별표 3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1조(이용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주차 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 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

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장설치심의 등) 법 제12조 1항,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 3 장 보 칙

제14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5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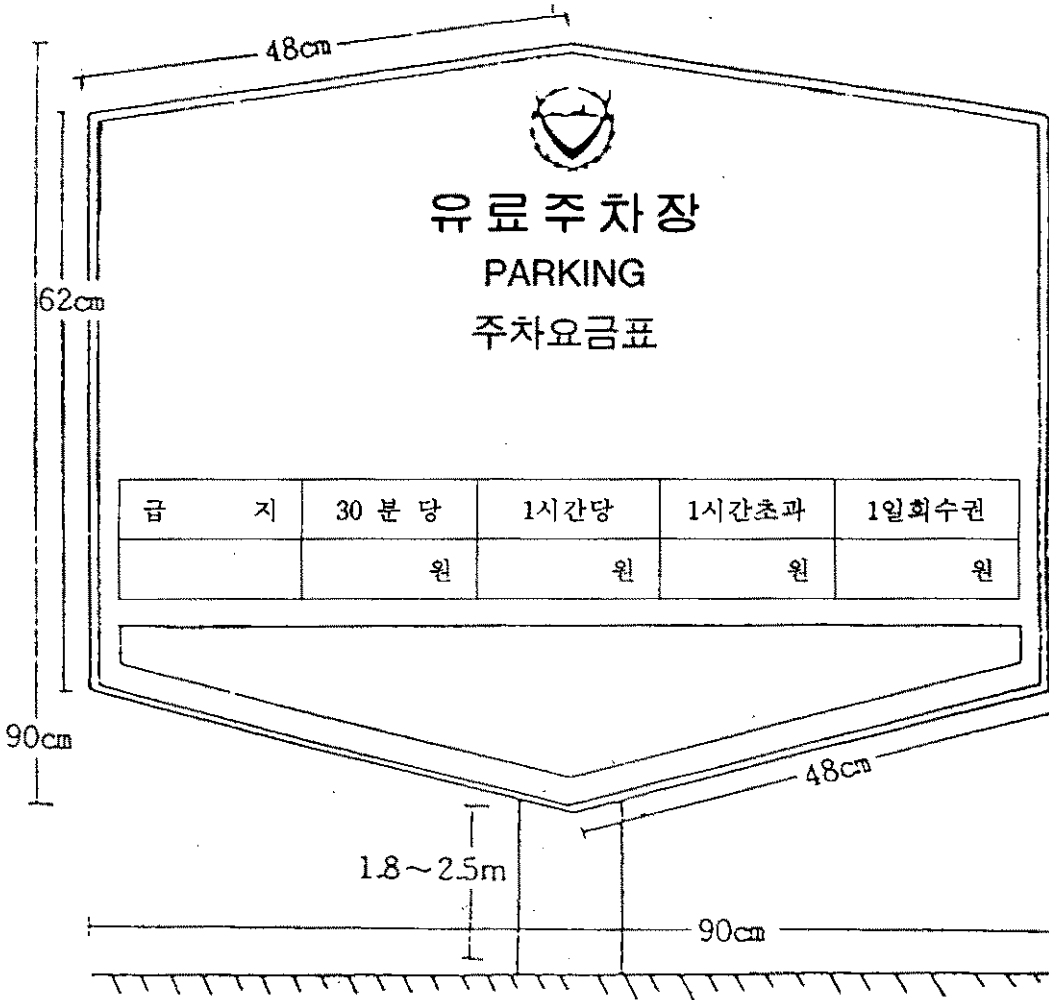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93.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노상주차장표지판

(제5조 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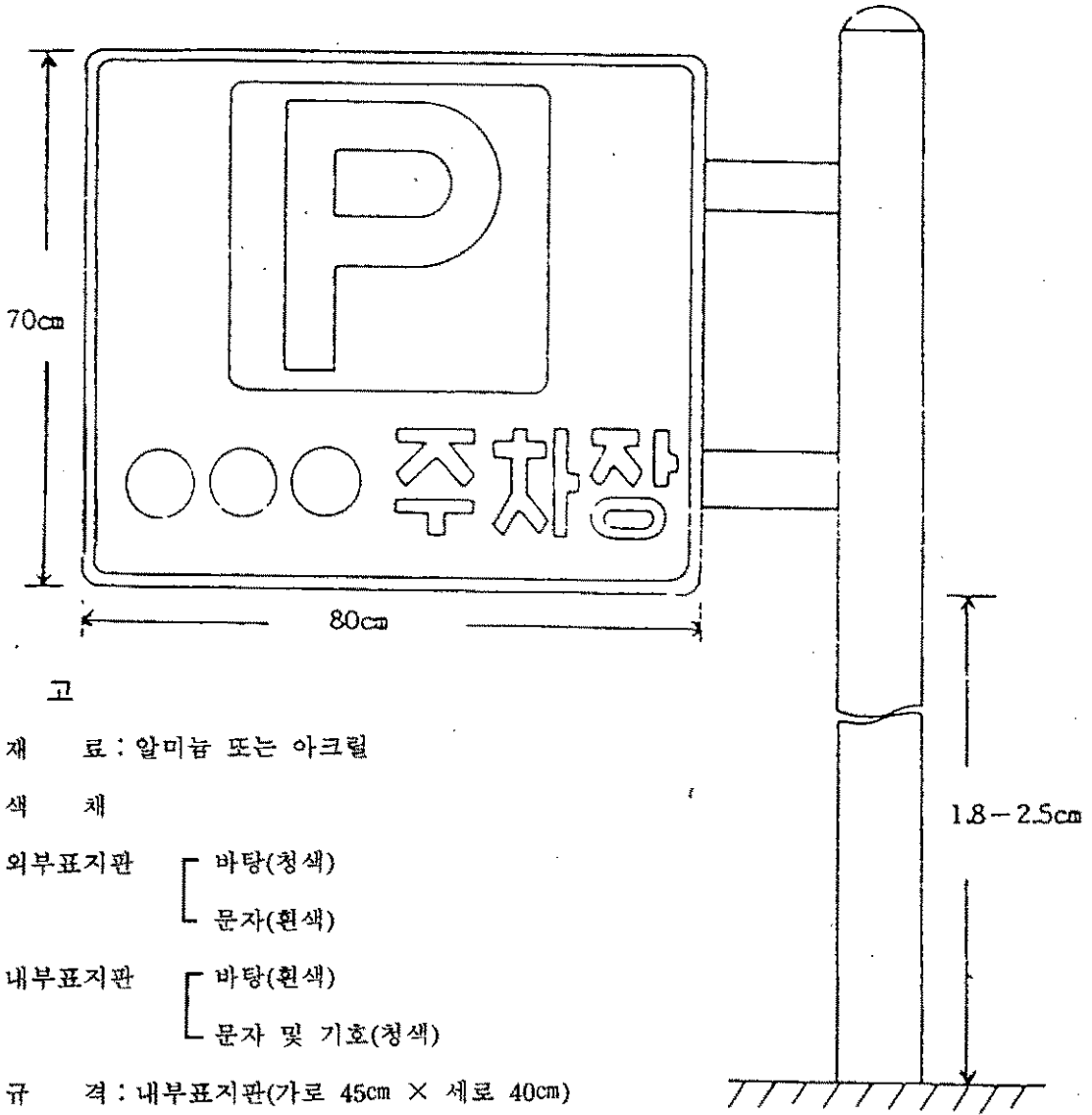


재 료	색 채			
	바 탕	시기표시	영 문	기타글씨(고딕)
알루미늄판	미 색	초 록 색	적 색	청 색

[별표 2]

노외주차장표지

(제5조 제2항 관련)



비 고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 바탕(청색)
 -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 바탕(흰색)
 -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45cm × 세로 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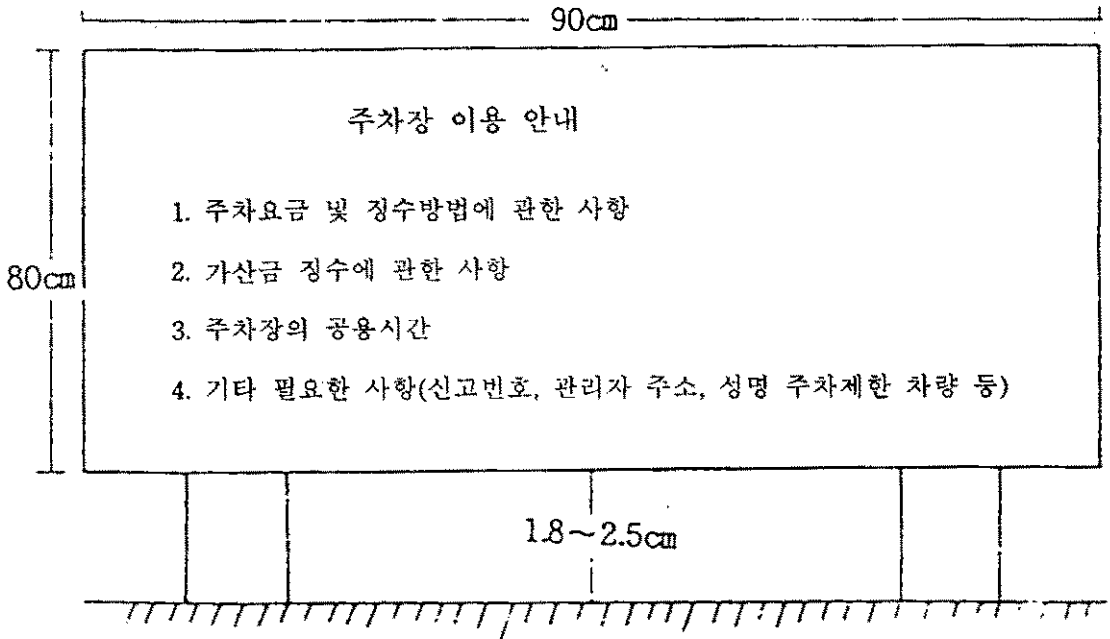
외부표지판(가로 80cm × 세로 70cm)

○ 주차장 표지판은 견고하게 시설해야 하며,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명장치를 하여야 함

[별표 3]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5조 제3항 관련)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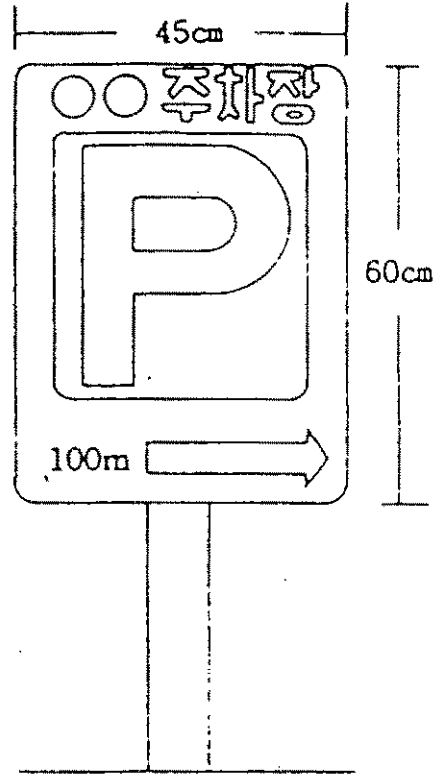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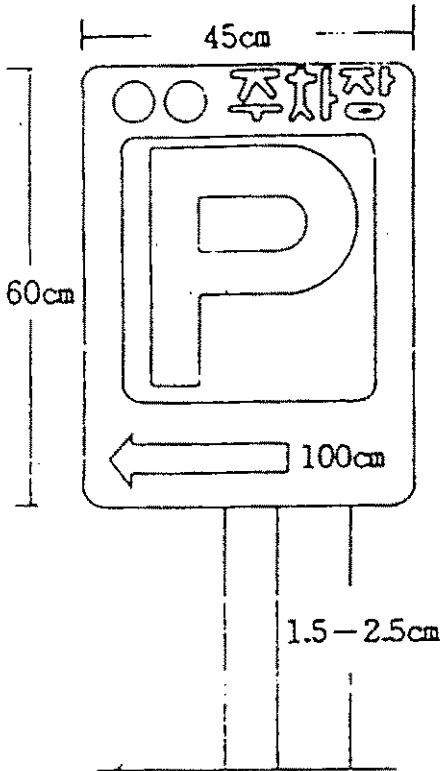
구 분	재 료	색 체	
		바 탕	글 씨 (고 덕)
노 상 주 차 장	알 미 늄 판	녹 색	흰 색
공 영 노 외 주 차 장	알 미 늄 판	녹 색	흰 색
민 영 노 외 주 차 장	알 미 늄 판	청 색	흰 색

* 색체의 기준색·허용오차는 도로표지판 규칙에 준함

[별표 4]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판

(제5조 제5항 관련)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내부표지판) : 가로 35cm × 세로 35cm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 : 청색
 - 문자 및 기호 : 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 : 흰색
 - 문자 및 기호 : 청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3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2조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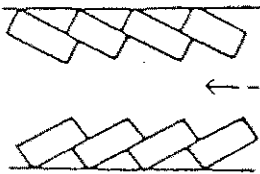
후퇴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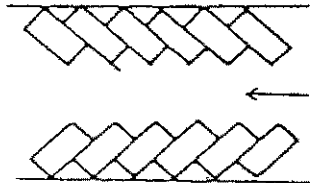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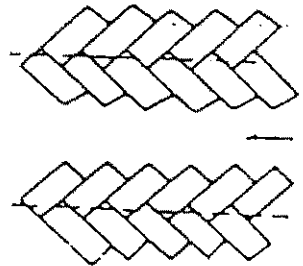
가. 3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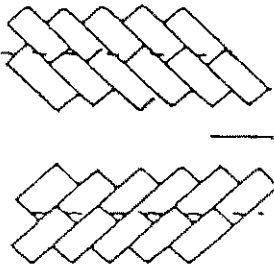
나. 45°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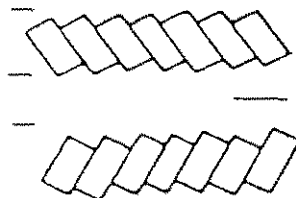
다. 45° 교차주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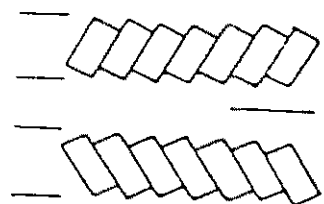
라. 45° 교차주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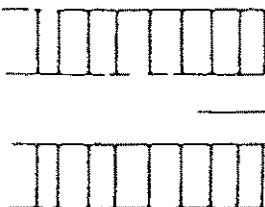
마. 6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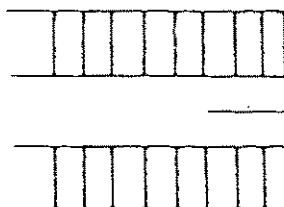
바. 60° 후퇴주차 (A)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별표 6]

과징금 가감기준(제14조 제1항 관련)

(금액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위 반 정 도	기본과징금	가감후 과징금	
			주차대수 40대미만	주차대수 40대이상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 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	위 반 시	250	250	250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		250	300
2. 관리규정을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위 반 시	100	90	100
	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 요금의 50%이상		100	110
	3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 요금의 100%이상		110	12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	위 반 시	50	45	50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6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위 반 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 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위 반 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 에 위반한 때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	45	55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0	6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 해한 때	위 반 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별표 7]

과태료 부과 기준

(제15조 관련)

위 반 행 위 별	구 분	과 태 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주차대수 40대 미만	90만원
	주차대수 40대 이상	100만원
2. 신고필증을 받기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주차대수 40대 미만	90만원
	주차대수 40대 이상	100만원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	주차대수 40대 미만	40만원
	주차대수 40대 이상	50만원

- 비 고 -

구청장은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 부과할 수 있다.